

지식재산권 부분 법률 개정 주요 내용

1. 상표법 개정

2016.02.29. 전부개정 / 2016.09.01. 시행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상표의 정의 (제2조)	(제2조) ‘상표’를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각목에서 표장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상표와 별도로 서비스표를 정의	(제2조) ‘상표’란 자기의 상품(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여, 상표의 개념에 서비스표가 포함되도록 정의 “표장”을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 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합리적 보완 (제119조 제4항)	(제73조)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을 이해관계인에 한정/불사용취소심결 확정 시 장래를 향하여 권리소멸	(제119조 제4항)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자격을 ‘누구든지’로 확대/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
상표의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제90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상표의 사용태양(제1호)과 구성태양(제2~4호)에 따른 상표권 제한사유이나,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 표현	(제90조)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간판 등에 사용(제1호)하는 경우, 그 구성태양과 관계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로 그 표현을 변경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 변경 (제34조 제2항)	(제7조 제2항) 상표부등록사유를 공익적 거절사유와 사익적 거절사유로 나누어 사익적 규정이라고 보는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로 규정	(제34조 제2항)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공익·사익의 구별없이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

2. 저작권법 개정

2016.03.22. 일부개정 / 2016.09.23. 시행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음반의 정의 (제2조 제5호)	음반을 음(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정의	음반의 개념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 포함
판매용 음반의 용어변경 (제21조)	판매용 음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
공정이용으로서 허용되는 비영리 목적 (제29조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공연'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확히 함
공정이용의 목적 삭제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목적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으로 열거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을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의 판단기준으로 규정	공정이용 조항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제2항 제1호 중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부분을 삭제